

[별지 제23호 서식]

감 사 보 고 서

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재무·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 및 산하기관(비콘, 베네스트 마음건강센터, 앞산베네스트, 수성베네스트, 대구 위니스, 드림빌) 의 2016. 1. 1.부터 2016. 12. 31.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2016년도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 정확하였으며,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.

2017년 1월 13일

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

감 사 손 희 철 (서명 또는



감 사 진 순 석 (서명 또는



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 대표이사 귀하